

대구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308106(본소), 2021나308113(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설계비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재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G(변경 전: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21152(본 소),

2020가단23028(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G,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고 한다)는 10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 G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2쪽 아래에서 3행부터 3쪽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C가 용역기간 내에 토목설계를 마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와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도 해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위 각 계약은 육계사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는 구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육계사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C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원고가 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토목설계 완성을 위해 필요한 건축개요, 건축배치도, 평면도 등 건축설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토목설계가 중단되었다.

2) 피고 G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육계사육시설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중도금 14,000,000원은 인·허가 신청시, 잔금 10,000,000원은 허가 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아직 토목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 C는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토목설계를 중단하였다는 주장과 토목설계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전자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을 2018. 2. 26.부터 2018. 7. 25.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토목설계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10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안과 자료 등은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사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C가 수행하여야 할 작업은 토목설계로 부지 및 도로에 대한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경사도분석, 공사계획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작성(이하 '1차 설계'라고 한다)과 부지에 대한 우수계획도, 오수계획도, 포장계획도, 구조물도, 설계내역서 작성(이하 '2차 설계'라고 한다)을 모두 포함하는데, 2차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개요, 건축배치도, 평면도 등 건축설계 자료가 필요한 사실, ③ 피고 C로부터 토목설계를 하도급 받은 I(대표 H)는 1차 설계를 마쳤으나, 원고가 피고 C나 I 측에 건축설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2차 설계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토목설계를 마치지 못한 것(2차 설계 부분)은 원고가 토목설계에 필요한 건축설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지체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육계사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각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준범,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